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37

발의연월일: 2021. 8. 31.

발 의 자:소병철ㆍ권인숙ㆍ김승남

김영주 • 백혜련 • 양정숙

오영환 • 용혜인 • 위성곤

이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으로 하여금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 인도적인 처리(안락사)와 관련하여 마취제의 사용, 약제의사용기록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고, 그 밖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등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양 공고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 보호조치를 개농장 등에 위탁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음.

이에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경우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동물 등의 분양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15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및 제46조제2항제1호의5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보호조치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2항 중 "공고할 수 있다"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경우 시행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을 "동물판매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에 제2호의8 및 제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8. 제15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자
- 2의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동물보 호센터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보호조치 중
	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
	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u>있다.</u>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4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	
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	
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⑤ ~ ⑩ (생 략)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생 저 략)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 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 고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 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0]	경우	동	물보	호선	<u>]</u> 터	로
<u>지정</u> [받은	기관이	나	단최	ll는	동	물
의 구	·조·s	ゼ호조	치 등	= 0 1	남무	를	제
3자에	게	위탁하	여서	는	아니]	<u>된</u>
<u>다.</u>							
	10	/ 처 체] -	7LO	`		

(b) ~ (D) (현행과 샅음)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1	(현
행과 같음)			

②
20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u>2</u>) ----

	<u>이 경우</u>
수의사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제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경우 시행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

③ (생략)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7 (생 략)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 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 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1의4. (생 략) <u><신 설></u>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힝	-
	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히	Ļ
	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	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판매업자는	_
		_
		_
		_
		_
	,	
	③ (현행과 같음)	
제	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_
		_
		_
	<u>.</u>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힝	F
	을 위반하여 질병 등의 사유	_
	가 있는 동물을 인도적인 빙	-
	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 3. (생략)

③ ~ ⑤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7. (생 략) <신 설>

<신 설>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1. ~ 2의7. (현행과 같음)

2의8. 제15조제4항 후단을 위반 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자

2의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